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시 설 명	소 재 지	구 조	면 적(m ²)		비고
남 산 창 작 센터	중구 퇴계로 26가길 82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966.20	
			토지	2,072.00	
금 예 술 공 장 천 장	금천구 범안로15길 57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구조	건물	3,070.94	
			토지	2,358.00	
연 희 문 학 창 작 촌	서대문구 증가로2길 6-7외 1	연와조	건물	1,480.15	
			토지	6,793.00	
서 무 용 센터	서대문구 명지2길 14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2,044.14	
			토지	3,105.55	
문 예 술 공 래 장	영등포구 경인로88길 5-4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2,832.40	
			토지	1,017.00	

사용기간 : '19.1.1. ~ '21.12.31.(3년)

신청인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용두동)

성명 :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대일

위 표시 재산의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 년 12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서울시창작공간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1.1.로부터 2021.12.31.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에 의거 대부기간 내 연도마다 서울특별시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사용허가 재산가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수리 및 보수) ① 해당 재산이나 사용인이 특별히 필요로 하여 설치한 시설·설비(기자재 포함) 등은 사용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유지·보수한다.

② 재산의 누수 및 붕괴 등으로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한 상태라고 건축물 안전진단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보수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와 사용인이 합의하여 사용인이 우선 수리·보수하고 그 비용은 서울특별시에서 부담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을 이행할 때만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제소전 화해) ① 서울특별시가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 본건 재산을 명도한다’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가 본건 재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사용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소전 화해 조서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비용부담은 당사자 각자 부담토록 한다.

제20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결정에 의한다.

제21조(세부 조건 등) 본 허가 조건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중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